제2977호
2023. 2. 2.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689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169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제169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규 칙]
제76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9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보건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사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친화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행정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동"을 "동(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생활안전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민친화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생활복지친화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생활도시친화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다만,총선거"를 "다만, 총선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중"을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환위원회"를 "소관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보건위원회	2. 행정보건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홍보담당관 ----------
나. 경제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관리국 ----------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동(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
<신 설>	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생활안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감사담당관 ----------
나. 시민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환경국 ----------
다. 생활복지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
라. 생활도시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교통국 ----------
<신 설>	마. 동(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다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 다만, 총선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상임위원 중----------.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생 략)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 소관위원회----------.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 사항 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2023. 1. 1. 시행)되어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된 국 명칭과 신설된 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장함(제3조제2항)

○ 그 밖에 띄어쓰기, 오·탈자 등 형식상 미비점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0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제53조”로, “총일수”를 “총 일수”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고,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9월·10월중”을 “9월·10월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50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를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1회”를 “매년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를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 총 일수----------
제3조(회기) ① (생 략)	제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휴일(토·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정례회---------- ----------. 다만,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 및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 9월·10월 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 ----------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③ ---------- 매년 1회 ----------.
④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④ ----------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임시회 소집요구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

○ 그 밖에 띄어쓰기, 오·탈자 등 형식상 미비점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10명 이하로”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폐쇄후”를 “폐쇄 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책임검사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검사위원”을 각각 “대표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을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실비보상”을 “실비지급”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위촉장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 촉 장

성 명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귀하를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실비지급----------.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5명 이상 10명 이내로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 폐쇄 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책임검사위원은 의원 중 호선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 대표위원-----.

현 행	개 정 안
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괄한다.	② 대표위원----------.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①·② (생 략)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실비지급) ① ---------- 실비지급---------- 범위----------. ----------.
②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 ---------. ---------- 「지방자치법」 제73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 및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정수 기준을 변경하여 결산 검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용어 등 형식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함(제2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등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서식을 변경함(별지 서식).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5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관한 조치) ① (생 략)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인 경우
<신 설>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2.·3. (생 략)	3.·4. (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 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 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급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회수 제한 사유 및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회수 포기를 방지하고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비용 회수 제한(포기) 대상 구체화 및 자격요건 명시(제22조제2항)

○ 소송비용 회수 절차 명시(제22조제3항)